TRADE BRIEF
NO 14
2025.08.18
ISSN 2765-6004

본 자료는 협회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. (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)

통상연구실 | 한아름 수석연구원 02-6000-5850, ariel.han@kita.or.kr

철강·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

美 상무부는 철강·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에 407개 파생제품을 추가하고 8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. 5월에 도입된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첫 결과로, 미국 산업계가 신청한 약 500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이 승인되었다.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셀 등 이미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되었으나,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.

추가된 품목 가운데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, 냉장·냉동고 등 가전제품,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이다. 이번에 지정된 품목의 미국 對한국 수입액은 총 118.9억 달러로, 미국의 해당 품목 對세계 수입의 약 5.8%를 차지한다.

향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 금번 발표에서 확인되었듯 美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·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으로 우려된다. 따라서 철강·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·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을 비롯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.

1. 주요 내용

▶ 美 상무부, 232조 관세 대상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에 407개* 품목 추가

* 미국 HTS 8~10단위 기준

- 관련 내용을 선공개하고(8/15 16시), **8/18부터 즉시 관세를 시행**한다고 밝힘(8/19 연방관보 공식 게재 예정)
  - **8/18 前 선적된 물품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**, 8/18 美 동부 표준시 0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모든 물품에 관세 부과

- 철강·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**파생제품 추가 절차**에 따른 조치
  - 美 상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철강·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추가 절차(Inclusion Process)를 발표('25.5.2.)
  - 1차 신청 접수 결과 美 산업계는 약 500개 품목(중복 제외) 추가를 요청

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절차 개요

美 업계 신청	이해관계자 의견 수렴	美 상무부 결정
美 기업·산업단체, 파생제품 관세대상 추가 요청	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지지/반박 의견서 접수	파생제품 해당 여부, 수입 증가·국가안보 위협 여부 기반 결정
연 3회(1월, 5월, 9월) 각 2주간 시행	신청서 게재 후 2주간	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
자료 : Federal Register(2025) 기반 저자 작성

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
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

• **(관세 적용방식) 철강·알루미늄 함량 가치**에 **232조 관세(50%),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**에 **상호관세(現 15%)** 적용

- 미국에서 제강된(melted and poured) 철강이나 주조·제련된(smelted and cast)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철강·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

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방식

대상		232조 관세(50%)	상호관세(現 15%)
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	철강·알루미늄 함량 가치	o	x
	철강·알루미늄 함량 外 가치	x	o

▶ 추가 신청 품목 약 500개 가운데,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됨

• 추가 절차상 상무부는 신청 품목의 (1)파생제품 해당 여부, (2)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232조 조치 목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도록 규정됨

• 그러나 철강·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(3304.99.50), 조제점결제(3824.99.9397) 등도 포함되고, 최근 3년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품목도 다수 추가됨

• 단, 이미 **타 품목에 대한 232조 관세가 적용되거나 조사 중**인 자동차 부품이나 트럭,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등은 **제외**됨

- 배터리 부품(8507.90.80), 엔진(8407.34.48), 기어박스(8708.40.11), 파워트레인 부품 (8708.99.68) 등 자동차 부품과 232조 조사 대상인 태양광 셀(8541.43.0010) 등은 제외

• 상무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결정문(decision memorandum)은 추후 미국 연방규제 관련 공식 포털(regulations.gov)를 통해 공개될 예정

▶ 그 밖에 부속서II를 통해 기존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적 수정이 이루어짐

• **(철강 파생제품)** 기존 7302.90.00을 7302.90으로 대체하여 품목 범위를 확대

• **(알루미늄 파생제품)** 9401.99.9081을 9401.99.9030, 9401.99.9070으로 대체

2. 영향 및 시사점

▶ 금번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약 118.9억 달러에 달함

• 미국의 對세계 수입(2,045억 달러) 중 약 5.8% 차지

추가된 품목 중 미국의 對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('24년 기준) (단위:백만달러, %)

순위	USHTS 코드	품목분류	품목명	철	알	對한국 수입	對세계 수입	對한국 비중
1	8418.10.00	가전제품	냉장·냉동고	기존	O	1,603.7	6,936.1	23.1
2	3304.99.50	화장품류	화장품	O	O	1,259.0	5,197.9	24.2
3	8708.99.81	자동차 부품	기타 자동차 부품	O	X	674.2	10,930.7	6.2
4	8428.90.03	기계류	엘리베이터 등	O	X	521.3	4,399.1	11.9
5	8427.20.40	기계류	포크리프트 트럭	O	X	500.8	1,536.4	32.6
6	8429.52.10	기계류	백호·셔블·클램쉘 등	O	X	417.3	4,931.8	8.5
7	8409.91.50	자동차 부품	엔진 부품	O	X	367.6	4,808.3	7.6
8	8504.23.00	전기기기	변압기 (10,000 kVA 초과)	O	X	347.2	2,895.4	12.0
9	8428.39.00	기계류	기타 권양·적하 등 기기	O	X	289.3	1,806.9	16.0
10	8415.90.80	가전제품	기타 에어컨 부품	O	X	287.5	9,672.8	3.0
11	8708.99.23	트랙터	농업용 트랙터 부분품	O	X	274.3	799.5	34.3
12	8701.93.10	트랙터	농업용 트랙터 엔진	O	X	248.6	1,107.8	22.4
13	8701.92.10	트랙터	농업용 트랙터 엔진	O	X	240.4	587.2	40.9
14	8412.21.00	기계류	유압 실린더	O	X	209.1	1,764.1	11.9
15	8544.60.6000	전기기기	전선·케이블	X	O	189.9	824.8	23.0
16	8479.90.95	기계류	기타 기계	O	X	184.0	3,531.8	5.2
17	3824.99.9397	화학공업	조제접결제	O	O	180.0	1,805.2	10.0
18	8427.20.80	기계류	기타 자주식 작업트럭	O	X	179.9	4,106.7	4.4
19	8429.51.10	기계류	프론트엔드 셔블로더	O	X	161.5	2,511.5	6.4
20	8457.10.00	기계류	머시닝 센터	O	X	145.8	1,275.5	11.4

자료: K-Stat

▶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, 가전제품, 건설기계, 자동차 부품 등

• **(변압기)** 10,000 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및 부품 총 11개 품목(HTS 8단위 기준)이 추가되었으며, 해당 품목에 대한 **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약 6억 달러 수준**('24년 기준)

- 변압기 핵심 소재인 **방향성 전기강판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** 미국 내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대체가 어려운 만큼 관세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

- 상무부는 2020년에도 멕시코·캐나다産 전기강판 가공품 수입 급증을 철강 232조 관세 회피행위로 간주하여 변압기 및 변압기용 전기강판 가공품에 대해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나 관세는 미부과

- **(가전제품) 냉장·냉동고**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**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**되었으며, **미국의 對한국 수입 규모는 약 16억 달러 수준**('24년 기준)으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큼

- **(건설기계)** 엘리베이터, 포크리프트 트럭, 권양·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되었으며, 철강 함량이 높아 관세 부담이 우려됨

- **(자동차 부품)** 기타 자동차 부품(8708.99.81), 엔진 부품(8409.91.50) 등 기존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됨

- **(화장품)** 미국의 對한국 수입 규모가 12.6억 달러 수준이며, **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** 관세 영향이 불가피

▶ 美 업계 요청과 상무부 직권으로 232조 관세 대상은 지속 확대될 전망

- 美 업계 요청에 따른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**연 3회(1월, 5월, 9월) 정례적으로 운영**되며, 2차 추가 절차는 9/1 개시될 것으로 예상

- 금번 추가 발표에서 확인되듯, 美 업계가 요청할 경우 **철강·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으로 우려**

- 가전제품 사례('25.6.16)와 같이 **상무부 직권에 의한 관세 대상 품목 확대**도 가능

-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7/1부로 추가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며, 향후 구리·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파생제품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

▶ 철강·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·알루미늄 함량 확인,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 필요

-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다국적 조달이 이루어지는 부품의 경우,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
- 특히 **알루미늄 파생제품**은 사용된 알루미늄의 **제련국,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**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, **200%의 관세**가 부과될 수 있음

- 이번에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향후 추가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
▶ **기업은 향후 진행될 추가절차의 의견서 접수 단계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관세 대상 확대에 대응할 필요**

- 美 상무부는 모든 파생제품 추가 요청서를 공개(regulations.gov)하고, 14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하므로, 철강·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 기업은 요청서 게재 시점에 맞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

- 美 업계의 신청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관세 확대를 견제할 필요